

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[별표 2의3] <신설 2022. 12. 20.>

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·조직·시설 및 장비 기준

(제13조의11제1항 관련)

구분	지정요건
1. 인력 및 조직	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4명 이상 확보할 것 1)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)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)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나.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, 교육생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
2. 교육시설 및 장비	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가. 사무실: 면적 30㎡ 이상(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) 나. 강의실: 면적 60㎡ 이상 다.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라. 카메라, 마이크, 컴퓨터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

비고

- 위 표에서 “교통 관련 분야의 학위”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공학, 교통학, 도시계획학, 도시공학, 교통계획,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로 한다.
- 강의실에는 책상·의자 및 빔 프로젝터·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인터넷 교육 신청·접수, 출결석 상황관리,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·관리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교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,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